

# 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

강도범죄의 양형기준은 강도(형법 제333조), 특수강도(형법 제334조), 준강도, 준특수강도(형법 제335조), 강도상해 · 치상(형법 제337조), 강도치사(형법 제338조), 상습강도 등(형법 제341조), ~~특정범죄가중~~  
~~법상 상습강도 등(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3항)~~, 누범강도 등(특정  
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), 강도상해 재범(특정범죄가중법 제5  
조의5)의 죄를 저지른 성인(19세 이상)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.

## ◆ 약어표 ◆

- 특정범죄가중법 :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- 특정강력범죄법 :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

# 1. 형종 및 형량의 기준

## 1. 일반적 기준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일반강도	1년6월 - 3년	2년 - 4년	3년 - 6년
2	특수강도	2년6월 - 4년	3년 - 6년	5년 - 8년

▷ 특정강력범죄(누범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.5배 가중

구분		감경요소	가중요소
특별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</li> <li>○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· 협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5인 이상 공동 범행(2유형)</li> <li>○ 금융기관 강도</li> <li>○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</li> <li>○ 총기 사용(2유형)</li> <li>○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</li> </ul>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아자</li> <li>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</li> <li>○ 자수</li> <li>○ 처벌불원</li> </ul>	
일반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</li> <li>○ 경미한 폭행 · 협박</li> <li>○ 생계형 범죄</li> <li>○ 소극 가담</li> <li>○ 흉기 단순 휴대(2유형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계획적 범행</li> <li>○ 비난 동기</li> </ul>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상당 금액 공탁</li> <li>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있음)</li> <li>○ 진지한 반성</li> <li>○ 형사처벌 전력 없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특정범죄가중(누범) · 특정 강력범죄(누범)에 해당하지 않는 이중 누범,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· 절도 실행전과(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)</li> </ul>

## 2.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일반강도	2년 - 4년	3년 - 7년	5년 - 8년
2	특수강도	3년 - 6년	4년 - 7년	6년 - 10년

- ▷ 상습강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및 특정범죄가중(강도 상해 재범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 · 누범강도의 양형기준을 적용
- ▷ 특정강력범죄(누범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.5배 가중

구분		감경요소	가중요소
특별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</li> <li>○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</li> <li>○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</li> <li>○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· 협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5인 이상 공동 범행(2유형)</li> <li>○ 금융기관 강도</li> <li>○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</li> <li>○ 중한 상해</li> <li>○ 총기 사용(2유형)</li> <li>○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</li> </ul>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아자</li> <li>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</li> <li>○ 자수</li> <li>○ 처벌불원</li> </ul>	
일반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</li> <li>○ 경미한 폭행 · 협박</li> <li>○ 생계형 범죄</li> <li>○ 소극 가담</li> <li>○ 흉기 단순 휴대(2유형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계획적 범행</li> <li>○ 비난 동기</li> </ul>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상당 금액 공탁</li> <li>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있음)</li> <li>○ 진지한 반성</li> <li>○ 형사처벌 전력 없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특정범죄가중(누범) · 특정 강력범죄(누범)에 해당하지 않는 이중 누범,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· 절도 실행전과(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)</li> </ul>

### 3.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

구분	감경	기본	가중
강도치사	6년 - 11년	9년 - 13년	11년 이상, 무기

▷ 특정강력범죄(누범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.5배 가중

구분		감경요소	가중요소
특별 양형 인자	행위	○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	○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○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
	행위자 /기타	○ 농아자 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 ○ 자수 ○ 처벌불원(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)	○ 반성 없음(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)
일반 양형 인자	행위	○ 소극 가담	○ 특수강도 범행
	행위자 /기타	○ 범행 후 구호 후송 ○ 상당 금액 공탁 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있음) ○ 진지한 반성	○ 특정범죄가중(누범) · 특정강력범죄(누범)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,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· 절도 실행전과(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)

#### 4. 상습·누범강도

구분	감경	기본	가중
상습·누범강도	5년 - 8년	6년 - 10년	8년 - 12년

▷ 특정강력범죄(누범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.5배 가중. 다만, 강도상해 재범(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5)에 해당되어 특정범죄가중(누범)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(누범)을 적용하지 아니함

구분		감경요소	가중요소
특별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</li> <li>○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·협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5인 이상 공동 범행</li> <li>○ 금융기관 강도</li> <li>○ 범행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(상습강도)</li> <li>○ 중한 상해(누범강도)</li> <li>○ 총기 사용</li> <li>○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</li> </ul>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아자</li> <li>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</li> <li>○ 자수</li> <li>○ 처벌불원</li> </ul>	
일반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</li> <li>○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</li> <li>○ 소극 가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계획적 범행</li> <li>○ 비난 동기</li> <li>○ 특수강도 범행</li> </ul>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상당 금액 공탁</li> <li>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있음)</li> <li>○ 진지한 반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특정범죄가중(누범)·특정강력범죄(누범)에 해당하지 않는 이중 누범,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·절도 실행전과(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)(상습강도)</li> </ul>

## [유형의 정의]

### 1. 일반적 기준

#### 가. 제1유형(일반강도)

-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(이하 같음).

구성요건	적용법조
단순 강도	형법 제333조
준강도(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, 체포를 면탈하거나,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· 협박)	형법 제335조

#### 나. 제2유형(특수강도)

구성요건	적용법조
야간 주거 등 침입 강도/준강도	형법 제334조 제1항, 제335조
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도/준강도	형법 제334조 제2항, 제335조

※ 특정강력범죄(누범)에 해당하는 경우(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)

구성요건	적용법조
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강도범죄를 범한 경우	특정강력범죄법 제3조

### 2.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

#### 가. 제1유형(일반강도)

구성요건	적용법조
강도/준강도(미수범 포함)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	형법 제337조

## 나. 제2유형(특수강도)

구성요건	적용법조
특수강도/준특수강도(미수범 포함)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	형법 제337조

## 3.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

구성요건	적용법조
강도/준강도/특수강도/준특수강도(미수범 포함)죄를 범한 자가 치사	형법 제338조

## 4. 상습·누범강도

구성요건	적용법조
상습으로 강도,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경우	형법 제341조
<del>상습으로 강도(미수범 포함), 특수강도(미수범 포함)의 죄를 범한 경우</del>	<del>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3항</del>
형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(미수범 포함), 제340조(미수범 포함)의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강도, 특수강도 등을 누범으로 범한 경우	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<b>제2호</b>
형법 제337조(미수범 포함)의 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재범한 경우	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5

## [양형인자의 정의]

### 1. 일반적 기준

#### 가.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-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(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
  -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,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
 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#### 나.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·협박

-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·협박에 그친 경우로서, 위험한 물건을 휴대·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.

#### 다. 5인 이상 공동 범행

- 5인 이상이 공동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.

#### 라.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

-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,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,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.

#### 마. 처벌불원

-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,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.
- 다만,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 등에 의하여 처벌불

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.

#### 바. 경미한 폭행 · 협박

- 폭행 · 협박의 정도가 공갈죄의 그것보다는 중하나 통상의 강도 사례보다는 경미한 경우를 의미한다.

#### 사. 생계형 범죄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-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
  - 치료비,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
 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#### 아. 소극 가담

-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.
- 다만,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강도를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.

#### 자. 계획적 범행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-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
  - 사전 공모
  - 피해자 유인
  - 증거인멸의 준비
  -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
 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### 차. 비난 동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- 피해자에 대한 보복·원한,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
  -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
 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### 카. 상당 금액 공탁

-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의미한다.

## 2.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

### 가. 경미한 상해

-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,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,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.

### 나. 중한 상해

- 치료기간이 약 4주 ~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,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,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.

## 2.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

### 가. 처벌불원(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)

-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,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

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.

-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.

**나. 반성 없음(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)**

-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,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,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.

## [양형인자의 평가원칙]

### 2. 형량범위의 결정방법

-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
- 다만,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  -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/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.
  -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/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.
  - ③ 위 ①,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,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-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,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, 그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.

### 3. 선고형의 결정방법

-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.
-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.

## [공통원칙]

### 1.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

-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/2까지 가중한다.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.
-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/2까지 감경한다.

### 2.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

-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/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.

### 3.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

-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사유로 고려한다.

## [다수범죄 처리기준]

### 1. 적용범위

-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.

### 2. 기본범죄 결정

-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/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. 다만,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.

### 3. 처리방법

-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.
  -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,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  -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,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2,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  -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.

## II. 집행유예 기준

구분	부정적	긍정적
주요 참작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종 전과(5년 이내 <b>금고형의</b> 집행유예 이상)</li> <li>○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</li> <li>○ 위험한 물건의 사용</li> <li>○ 중한 상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·곤란 시도</li> <li>○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</li> <li>○ 처벌불원(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)</li> <li>○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·협박</li> <li>○ 형사처벌 전력 없음</li> </ul>
일반 참작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회 이상 <b>금고형의</b> 집행유예 이상 전과</li> <li>○ 계획적 범행</li> <li>○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</li> <li>○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</li> <li>○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</li> <li>○ 약물중독, 알코올중독</li> <li>○ 진지한 반성 없음</li> <li>○ 피해 회복 노력 없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</li> <li>○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</li> <li>○ 자수</li> <li>○ 진지한 반성</li> <li>○ <b>금고형의</b>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</li> <li>○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</li> <li>○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</li> <li>○ 피고인이 고령</li> </ul>

## [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]

-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
  -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.
  
- 전과의 기간 계산
  -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,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.

## [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]

-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,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.
  -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.
  -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.
  -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(긍정)사유와 일반긍정(부정)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(부정)사유와 주요부정(긍정)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,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.